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 지정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설립 연월일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4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지정	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다.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라. 검사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사. 검사장비의 운용·관리 아. 수수료의 징수 기준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기재사항 변경	1.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